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일, 윤호중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4. 11. 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2024. 11. 15.)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2024. 11. 18.)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2024. 11. 19.)

상정,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2024. 11. 20.)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회의(2024. 11. 21.)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원회(2024. 11. 2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원회(2025. 11. 1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원회(2025. 11. 24.)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소위원회(2025. 11. 30.)

상정, 의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5. 11. 30.)

상정, 찬반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윤호중의원)

현행법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4년 연간 출산율이 0.6명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커서 현행 공제제도로는 저출생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

므로 현행 공제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민간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한편,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주택임차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한도액을 상향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며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을 인상하며,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 등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